

---

## (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정관

---

2015. 5. 27. 제정  
2022. 10. 28.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에 대한 연속유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10.28.>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28.>

- 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기초자료 마련 및 협조 사항
  1. (9개 서원)통합관리계획 수립
  2. (9개 서원)통합홍보방안 마련
-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 및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 근거한 통합관리 기구의 역할 이행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
  2. 정기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
  3. 9개 서원의 통합관리(모니터링 등) 시행
  4. 9개 서원의 통합홍보(교육, 홍보 등) 시행
- ③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위탁기관의 역할 이행에 관한 사항
  1. 한국의 서원에 관한 기초조사
  2.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 분석 평가(1년 주기)
- ④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문화재청장, 관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재단은 사업의 수행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및 정원)**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상 25명 이내(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1명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선임 절차 없이 이사로 한다(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개정 2022.10.28.>

1.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이하 “관할 광역자치단체” 라 한다) 담당 국장
2. 영주시, 함양군, 경주시, 안동시, 장성군, 달성군, 정읍시, 논산시(이하 “관할 기초자치단체” 라 한다) 부단체장
3. (삭제) <2022.10.28.>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이사로 한다.

1.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전문위원회 소속 학술전문가 중 4명
2.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운영자 중 9개서원 운영위원회 중 3명(회장, 부회장, 총무)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1. 회계전문가
2. 변호사
3. 기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제8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제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선임절차 없는 제7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22.10.28.>

② 제1항의 당연직 이사는 비등기 이사로 한다.

③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④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정관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⑥ (삭제) <2022.10.28.>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정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감사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1조(임원 보수의 제한)**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회계감사의 경우 제반 업무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 제3장 이사회

**제12조(구성)**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재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한국의 서원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및 승인 <개정 2022.10.28.>
5.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활용 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 승인 <개정 2022.10.28.>
6.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이사장, 다른 이사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개의정족수에 당해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제17조(서면결의 금지 등)**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없다. 단, 임원의 인사 및 신상의 변동 또는 실효적 사업추진을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결의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1. (삭제) <2022.10.28.>
2. (삭제) <2022.10.28.>

3. (삭제) <2022.10.28.>

**제18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4장 분과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8.>

- ② (삭제) <2022.10.28.>
- ③ (삭제) <2022.10.28.>
- ④ (삭제) <2022.10.28.>
- ⑤ (삭제) <2022.10.28.>

**제20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 ② (삭제) <2022.10.28.>

**제21조(구성 및 역할)** ① 재단은 한국의 서원의 통합관리·활용에 전문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보존협의회, 행정위원회, 전문위원회, 9개 서원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28.>

②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은 세계유산법(제18조)에 정의된 내용에 근거한다. <신설 2022.10.28.>

③ 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논산시, 정읍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달성군, 장성군 및 함양군의 문화재 담당 과장, 재단 센터장으로 구성

2. 역할 :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한국의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서원 및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2. 역할 : 재단의 사업계획, 통합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의 학술적 자문 <개정 2022.10.28.>

⑤ 9개서원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의 운영자 중 서원 당 각 1명 <개정 2022.10.28.>

2. 역할 : 해당 서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자문 및 제안 <개정 2022.10.28.>

⑥ (삭제) <2022.10.28.>

⑦ (삭제) <2022.10.28.>

⑧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장 사무집행 기관

**제23조(사무국)** ① 재단의 운영 및 세계유산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2.10.28.>

② 사무국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기타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2.10.28.>

③ 센터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센터장 임명 전까지 이전 재단의 사무국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2.10.28.>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분장 사무, 직원의 임면과 복무, 보수 및 수당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서원이 소재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0.28.>

**제24조(사무국의 역할)** ① 재단 사무국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28.>

1. 기획 및 홍보 : 이사회 운영,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조정, 조직, 정관, 제 규정 관리, 통합 홍보 및 활용계획, 지자체 주민협력 지원 등 <개정 2022.10.28.>

2. 연구 및 관리 : OUV 심화연구, 서원 학술조사 및 연구, 세계유산 정기보고(정기점검) 자료 데이터 구축, 통합모니터링 운영 등 <개정 2022.10.28.>

② 재단 사무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운영지침), 세계유산법(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맞게 한국의 서원이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 ③ 재단 사무국은 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 ④ (삭제) <2022.10.28.>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5조(수당 및 여비지급)** ① 재단의 임원과 각 소속위원 등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 참석,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기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단체 또는 일반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 또는 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 제27조(경비의 조달)**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삭제) <2022.10.28.>
  3. (삭제) <2022.10.28.>
  4.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5. 기타 수입금

-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산 외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자금의 차입(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자치단체의 허

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0.28.>

③ 기본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 등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30조(회계)**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호(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용역 및 사업발주에 대한 계약방법은 법령 등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28.>

**제31조(사업 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28.>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 내용 및 변경 승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8.>

**제32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이후 문화재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8.>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법인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공고)** 재단이 법령, 정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 제7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제3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시 선임하는 재단임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승계)** 재단은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승계)** 재단은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2.10.28.>

##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 1. 총액

구분	금액	비고
현금	30,000,000원	임차보증금

### 2. 출연기관별 내용

구분	출연내역		비고
	방법	금액	
합계	현금	30,000,000원	임차보증금
영주시청	현금	30,000,000원	

## <별표 2> 재단임원

- 이사장 : 이사회 선출 1인 (임기 2년)
- 이 사 : 임기 2년

당연직 (14명)	선임직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직위에 취임하는 인사</li> <li>-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담당 국장</li> <li>- 영주시, 함양군, 경주시, 안동시, 장성군, 달성군, 정읍시, 논산시 부단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인사</li> <li>-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전문위원회 소속 학술전문가 4명</li> <li>-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운영자 중 9개서원운영위원회 3명(회장, 부회장, 총무)</li> </ul>

<개정 2022.10.28.>

- 감사 : 임기 2년
  - 이사장이 선임한 외부 회계전문가 1명

위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5. 5. 27.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발기인 대 표 이 배 용(1947.01.05.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42길 2, 104동 2401호(염리동, 마포자이)

발기인 김 덕 현(1949.11.02.생)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475번길 16-5, 103동 1101호(초전동, 청구아파트)

발기인 김 선 의(1956.06.27.생)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211, 2층호(둔산동)

발기인 김 인 수(1939.02.07.생)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131번길 60, 302동 303호(운암동, 우미3차아파트)

발기인 이 동 구(1950.09.01.생)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1길 108, 107동 903호(정하동, 화성드림파크)

발기인 이 상 해(1948.01.11.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65, 105동 1701호(도림동, 동아에코빌)

발기인 이 해 준(1953.11.01.생)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 63, 104동 602호(덕명동, 하우스토리네오미아아파트)

발기인 정 순 우(1954.02.17.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3, 603동 202호(구갈동, 가현마을신안아파트)

발기인 한 찬 희(1955.01.21.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33, 106동 701호(서초동, 서초교대이편한세상아파트)

##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이사 현황

### ○ 당연직 이사(정관 제7조 제1항)

연번	소속	직위	비고
1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2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3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4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5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6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7	달 성 군	부군수	
8	논 산 시	부시장	
9	정 읍 시	부시장	
10	장 성 군	부군수	
11	경 주 시	부시장	
12	안 동 시	부시장	
13	영 주 시	부시장	
14	함 양 군	부군수	

### ○ 선임직 이사(정관 제7조 제2항)

연번	소속	직위 및 성명	전공	비고
1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이배용(이사장)	역사	
2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김덕현	지리	
3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해	건축, 세계유산	
4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준	역사(서원 경제)	
5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정순우	교육(서원 교육)	
6	병산서원	별유사 류한욱		9개서원운영위원회 회장
7	남계서원	원장 이창구		9개서원운영위원회 부회장
8	도산서원	별유사 이동신		9개서원운영위원회 총무

### ○ 감사(정관 제7조 제4항)

연번	소속	직위 및 성명	비고
1	딜로이드 안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찬희	